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정정보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7. 7. 18. 자 판결(2006가합10278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2006. 10. 20. A1면 『조선일보 또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2면 『“컴퓨터 돌려보니 조선일보 뽐혀”』 제하의 기사, 2006. 10. 21. A2면 『“종합지 매출 1위라 뽐았다” 선정 이유 하루 만에 뒤집어』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35면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 제하의 사실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시인했으며 2001.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인정한 전군표 국세청장의 2006. 7. 인사청문회 발언을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1.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뒤집었고 국세청의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이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허위의 사

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문제 삼은 청장들의 발언에 대한 표현과 기사의 일부 표현은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그 기초되는 청장들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점, 전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도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하루 만에 뒤집었고, 다음번 대상은 매출액이 기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해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하였다. ③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 8.경 '따뜻한 세정 결의대회'를 통해 "세무조사건수를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두 달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꿔 조선일보에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④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 7. 인사청문회에서 2001.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인정하였으나,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⑤ 국세청의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은 국세청 관계자가 "전산 분석으로 선정된 업체에 조사를 나가보면 폐업했거나 부도난 업체가 적지 않다"고 말하는 등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다(원고 주장의 위 각 사실을 이하 '① 내지 ⑤ 사실'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다'고 적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에서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우선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

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① 사실 관련)

(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제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 ③ 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 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8조(신고성실도 평가)
-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소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

관리정보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 시 평가요소 및 가중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6. 10. 19. 피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조사사유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제5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박찬욱 청장의 2006. 10. 20.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요지(②사실 관련)

(가) 언론사도 일반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있어서 영역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 세무조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2001.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중앙 언론사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없어 5년이 막 지나고 있는데, 2001.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지방 언론사의 경우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왔다.

(나)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장기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는 4년에서 7년 사이의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조사 기간이 4년 내지 7년에 미치지 않아도 선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탈세제보라든지, 각종 과세자료, 각종 정보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이다. 이번 언론사 조사대상으로 발표된 3개사 및 계열사의 경우는 앞의 두 가지 선정기준, 즉 장기 미조사에 대한 부분과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정되어 선정된 것이다.

(다) 1980.부터 법인세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된 이래 신고성실도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는

바, 그 선정은 납부세액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율, 신고 소득율, 소비성 경비율 등 20여개 이상 평가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임의성이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라) 이번 정기선정에서 다수의 언론사들이 전산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 및 장기 미조사를 사유로 선정되었는바, 작년 말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차 조사까지 끝나게 된 현 시점에서 조사인력의 여유가 있어서 선정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마) 다만 세무조사 순서에 있어서는 객관적 우선순위 기준으로서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규모(매출액 기준)가 제일 큰 순위로 먼저 3개사를 동시에 선정하였다. 다른 정기 선정된 언론사도 모두 조사를 할 것이다.

(바)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조사시기는 조사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이번에는 조사인력에 여유가 있어 세 유형 중 하나씩 했지만, 다음번에도 이번에 정한 유형과 순서대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 등(③, ④ 사실 관련)

(가) 전군표 청장은 2006. 7. 13.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2001.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일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2001.에 23개 언론사를 동시에 세무조사 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국세청이 2006. 8.경 배부한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선정대상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

하였음'이라고 조사대상 선정규모의 대폭 축소와 그 축소범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⑤ 사실의 허위성 인정 여부

(1) ① 사실

이 사건 보도에서 수차례 '전산 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위 표현과 더불어 사용된 '전산 추첨'과 '컴퓨터 추첨'에서 '추첨'이라는 단어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조서(을 9호증의 5)에도 원고측 대리인이 위 중재위의 조정심리기일에서 "선정은 '전산추첨'에 의한 것이었지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② 사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기세무조사의 대상 언론사를 선정한 기준과 선정된 언론사 중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언론사를 선택한 기준을 구별하여 그 기준을 밝히면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 중 피고가 세무조사를 먼저 받게 된 기준이 '매출액'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 중 다음번 조사를 받게 될 대상은 조사인력의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다음번에도 이번에 정한 유형과 순서대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 중 최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정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언론사들이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세무조사의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보다는 그 조사 순서를 정한 기준이 더 관심사 일 수밖에 없어 보이며, 또한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는 예외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의 순서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위 박찬욱 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음번에도 이번에 정한 유형과 순서대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선정이유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위 박찬욱 청장의 기자회견 이전에는 언론사 중에서 피고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로 '전산 선정'의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었을 뿐이다)', '잣대의 이중성을 인정했다'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과 위 표현이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③ 사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2006. 8.경 밝힌 세무조사 대상의 축소방침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인에 대한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도에서 위 사실과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은 '국세청이 정기조사를 줄인다고 밝힌 지 두 달도 안 돼 5년 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사를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관련 발언을 인용한 것인바, 위 발언의 취지는 비록 피고를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축소방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축소방침을 밝힌 지 불과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피고를 포함한 언론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보도에서 위 발언의 인용을 통하여 원고가 국세청에서 두 달 전에 발표한 축소방침을 뒤집어 피고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 역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④ 사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 7. 13. 인사청문회에서 '2001.에 23개 언론사를 동시에 세무조사 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도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의 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를 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어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역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발언이 전군표 국세청장의 위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위 청장들의 발언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도에서 그 기초되는 위 청장들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이상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5) ⑤ 사실

위 사실은 전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그 정정을 구하는 위 ① 내지 ⑤ 사실이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최인화

